

문서 관리번호	H12300001683-20250416-002328
최종 수정일	2025년 3월 6일
문서 관리부서	구매기획팀

현대제철(주) 분쟁광물(책임광물) 정책

제 · 개 정 이 력	차수	제·개정일	주요 내용
	1	2025년 3월	초도 제정

[담당 부서]

구매본부 구매기획팀

[담당 임원]

구매본부장

1. 목적 및 체계

1.1 제정 목적

현대제철 분쟁광물(책임광물) 정책은 분쟁/책임 광물에 대해 채굴·구매 등 해당 품목을 사용하기 위해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, 환경파괴 등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책임있는 광물 공급망 구축을 통해 관련 임직원뿐만 아니라 공급협력사의 동참을 통해 문제해결 및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.

1.2 용어 정의

- 1) ‘분쟁광물’이란 아프리카 10개국 (콩고민주공화국, 콩고공화국, 수단, 르완다, 브룬디, 우간다, 잠비아, 앙골라, 탄자니아, 중앙아프리카) 등 분쟁이 일어나는 국가에서 생산되는 광물인 주석(Tin), 텅스텐(Tungsten), 탄탈륨(Tantalum), 금(Gold)을 말한다.
- 2) ‘책임광물’이란 분쟁광물 외 채굴과정에서 인권침해나 환경파괴 이슈가 제기되는 광물을 말한다.
- 3) ‘RMAP’이란 ‘Responsible Minerals Assurance Process’의 약자로, RMI(Responsible Minerals Initiative; 책임광물 이니셔티브)에서 주관하는 분쟁/책임광물 미사용 제련소에 대한 실사 및 보증 프로그램을 말한다.
- 4) ‘도드-프랭크 금융규제개혁법 1502조’이란 금융체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미국의 금융안정을 제고하기 위해 미국 의회에서 제정된 법안 중 분쟁광물과 관련된 조항을 말한다.
- 5) ‘OECD 실사지침서’란 기업이 이행함으로써 기업운영, 공급망 및 기타 사업관계와 연계되어 있는 근로자, 인권, 환경, 뇌물수수, 소비자 및 기업지배구조 등에서 발생할 여러 부정적 영향들을 방지하고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권고사항을 말한다.

1.3 적용 범위

- 1) 본 정책은 회사의 본사, 국내/외 생산 및 판매법인과 지점, 자회사 등 회사의 재무적 연결범위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.
- 2) 본 정책을 적용받는 임직원은 협력사, 대리점, 아웃소싱 파트너 등을 대할 때에도 본 분쟁/책임광물 정책을 준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.
- 3) 본 정책에서 권장하고 있는 행위가 해당 국가의 법과 모순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법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.

2. 정책 운용

2.1. 전략 방향

분쟁/책임광물과 관련된 품목의 판매 자금이 전쟁에 투입되거나, 채굴 시 노동력이 착취되는 등 인권 및 환경 관련 문제가 야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대제철은 미국 의회의 ‘도드-프랭크 금융규제개혁법 1502조’와 OECD의 ‘실사 지침서(Due Diligence Guidance)’를 기반으로, 인권 및 환경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광물 공급망 구축이 의무화 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쟁/책임광물과 관련한 공급망을 투명하게 관리한다.

2.2. Guideline

- 1) 현대제철은 분쟁지역에서 비윤리적으로 채굴되는 3TG 분쟁광물 (주석, 탄탈륨, 텅스텐, 금)의 사용을 금지한다.
- 2) 현대제철은 협력사가 RMAP 인증을 취득한 제련소와 거래하도록 정기교육 및 분쟁/책임 광물 관리 가이드 제공을 통해 지원한다.
- 3) 현대제철은 질의서, 서면 확인 등을 통해 협력사가 분쟁/책임광물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다.
- 4) 현대제철은 협력사의 공급망에서 분쟁/책임광물 리스크를 도출할 시, 책임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개선을 요구한다.
- 5) 현대제철은 광물 채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, 환경파괴 등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, 이러한 활동 내용의 보고서를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적극적으로 공유한다.